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15
----------	-------

발의연월일 : 2025. 7. 2.

발 의 자 : 이상식 · 이병진 · 임호선
양부남 · 모경중 · 조계원
용혜인 · 이개호 · 박선원
윤준병 · 이재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5년 이상 치안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20년 이상인 사람

⑫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11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찰청장) ① ~ ⑩ (생략) <u><신 설></u>	제14조(경찰청장)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u> <u>1. 15년 이상 치안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u> <u>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u>

<신 설>

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
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20년 이상인
사람

⑫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청장
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
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
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
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4. 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
무원 또는 제11항제2호의 판

	<u>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5. <u>제1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	--